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에 성별·연령별 요소 반영 등 〉
■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24호)

2026. 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에 성별·연령별 요소 반영 등	2
※ 참고자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10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4일 김선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연령·지역·장애·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기본원칙과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있어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제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2항 등).

III. 검토의견

1.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에 성별·연령별 요소 반영 등

개정안은 ① 기본원칙에 성별(여성)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4호), ②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인적사항에 대해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며(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③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람에 대한 조사·평가가 포함된 때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	4. ----- ----- ----- ----- ----- -----

현행	개정안
는 취약한 계층·<u>부문</u>·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 -----<u>여성·부문</u>----- ----- -----.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 ----- ----- ----- -----. <u>다만, 결과보고서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한다.</u>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계획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시·군·구계획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 ----- ----- ----- ----- ----- ----- ----- ----- ----- ----- -----. <u>다만, 결과보고서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한다.</u>

기후정의 추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3조²⁾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의 추진상황을 종합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군·구계획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개요]

□ 점검개요

- (대상) 국가 기본계획('23.4월) 82개 단위과제의 '24년 추진상황 및 성과
- (방법)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개선·보완사항 등 결과보고서 작성
- (절차) 관계부처 실적 제출 → 전문위 점검 → 분과위 검토·점검자문단 자문 → 탄소중립이행책임관회의 → 총괄위 검토 → 전체회의
- * 전문위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을 위촉, 분과위 내 14개 위원회로 구성(167명)
- 분과위 : 탄녹위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3개 위원회로 구성(35명)
- 자문단 :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해관계자(청년·시민단체 등)로 구성(15명)

< 이행점검 체계 >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① **(점검 체계화)** 전문위에서 82개 단위과제 점검, 분과위에서 16개 부문별 검토
 - * '24년은 이행점검단을 별도 구성하여, 16개 부문만 포괄적으로 검토
- ② **(전문성 제고)** 전문가를 대폭 확대하여 점검위원 보강('24. 73명 → '25. 189명)
- ③ **(환류 강화)**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를 통해 결과 사전 공유 및 조치계획 제출

출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2025.11.

아울러 현행법 제37조³⁾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일환으로 기후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과 이상 기후·극한기후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예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위기의 감시·예측을 위한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상청은 제1차 기후변화감시예측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시·예측 정보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출처: 기상청, “기후위기 시대, ‘제1차 기후변화감시예측 기본계획’ 수립 2025년 제5차 탄핵위 전체회의 심의 통과”, 2025.11.

한편, 이러한 기본원칙 또는 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 결과보고서 등에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개정안은 성별·연령 등을 기본원칙 및 기후위기 정책의 고려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대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본시책은 법률의 기본원칙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규정으로서 포괄성과 일반성이 요구되는바, 특정 집단인 ‘여성’만을 명시하는 것은 기본시책의 규범 구조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특정 성(性)을 명시하는 것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⁴⁾.

둘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본계획은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 및 취약성 평가,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적·기본적·거시적 정책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4) 참고로, 2025년 12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를 신설하였는데, 여기서도 여성이 명시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기본계획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연령별 요소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기본계획의 체계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심사⁵⁾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5) 참고로,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에서 사람에 대한 조사·평가가 포함된 때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기상청은 수용하는 입장임.

※ 참고자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